

##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해외건설촉진법 제15조의3과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해외건설업자”란 해외건설촉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5호의 자를 말한다.
2. “해외도시개발사업”이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

**제3조(설치 및 조직)**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의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센터는 기획홍보팀, 사업지원팀으로 구성하고, 세부 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.

**제4조(운영기관)** 법 제15조의3제4항,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“운영기관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**제5조(기능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해외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보제공, 발굴, 진출 자문
2.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 기업 및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기회 제공
3. 국내 도시개발·주택건설(주택금융, 지적 및 측지사업 포함) 관련 정책 및 기술의 제공

4. 해외도시개발사업 동향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가 지원
5.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 전략 및 참여방안 연구
6. 해외도시개발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지원 협의회 운영
7. 해외도시개발진출 금융활동 및 수출 보증업무 제도개선 지원
8.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
9. 해외도시개발 및 주택관련 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 초청 연수
10.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**제6조(운영계획의 수립)** 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**제7조(사업계획 및 실적관리)** ① 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미리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② 운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실적을 분야별·시기별로 기록·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말 시행결과를 평가·분석하여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운영기관에 대한 지원)**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부예산에서 센터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, 운영경비 등을 지원한다.

**제9조(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)** ① 운영기관은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한다.

1. 운영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의 예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2. 운영기관은 예산부족시 자체 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에도 정부지원예산과 자체 충당재원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3.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시 지출결의서, 영수증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, 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승인)** 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결산서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11조(예산집행 및 회계기준의 준용)**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의 예산집행 및 회계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12조(지도.감독 등)**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지시할 수 있다.

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**제13조(재검토기한)** 「훈령·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일로 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